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49 발의연월일: 2025. 2. 6

발 의 자: 박형수 · 엄태영 · 조정훈

임이자 · 김도읍 · 김대식

서지영 • 권영진 • 김성원

구자근 • 윤영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,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.

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,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·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조정위원회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2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 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7조의2(안건조정위원회) ① ~ | 제57조의2(안건조정위원회) ① ~ |
| ⑥ (생 략) | ⑥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⑦ 조정위원회는 그 구성일부 |
| | 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의결 |
| | 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장이 간 |
| | 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 |
| | <u>지 아니하다.</u> |
| <u>⑦</u> ~ <u>⑩</u> (생 략) | <u>⑧</u> ~ <u>⑪</u> (현행 제7항부터 제1 |
| | 0항까지와 같음) |